

2010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2호)

- 2010년 1월 1일 시행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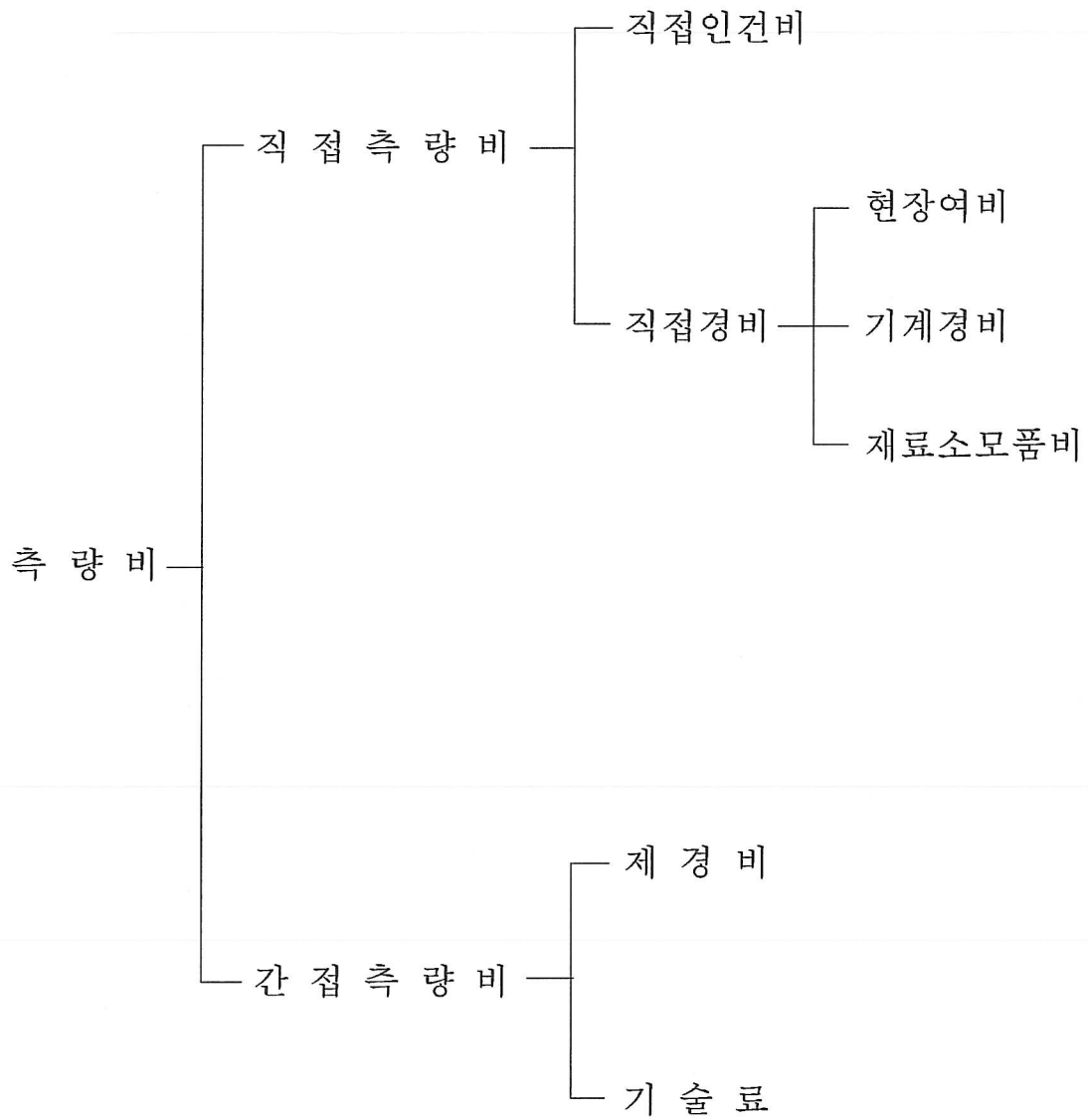
대한지적공사
Korea Cadastral Survey Corp.,

1. 지적측량비의 구성	3
2. 측량비의 산출기준액표	7
2.1 인건비 기준액표	9
2.2 직접경비	10
2.2.1 현장여비	10
2.2.2 기계경비	11
2.2.3 재료소모품비	15
2.3 간접측량비	19
2.3.1 제경비	19
2.3.2 기술료	19
3. 단가산출표	21
3.1 신규등록측량	23
3.2 등록전환측량	29
3.3 분할측량	33
3.4 경계복원측량	41
3.5 지적삼각측량	49
3.6 도근측량	53
3.7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57
3.8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61
3.9 지적도 작성	65
3.10 지적도 재작성	69
3.11 도면작성	73

3.12 수치화일	77
3.13 좌표입력	81
4.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85
5.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113
6. 부 록	119
6.1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121
6.2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27
6.3 [별첨1]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135
6.4 [별첨2]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139
6.5 [별첨3]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147

1. 지적측량비의 구성

1. 지적측량비의 구성



2. 측량비의 산출 기준액표

2. 측량비의 산출 기준액표

2.1 인건비 기준액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인건비(1일 기준)	비 고
지 적 기 사	164,520	
지 적 산 업 기 사	150,210	
지 적 기 능 사	104,980	
인 부	50,280	

※ 대한건설협회 2009. 9. 1자 공표

- 원가조사-306(2009. 8. 31) [통계청 승인번호 36504]

2.2 직접경비

2.2.1 현장여비

(금액단위 : 원)

구 분	여 비	비 고
지 적 기 사	20,000	
지 적 산업 기 사	20,000	
지 적 기 능 사	2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국내여행자의 일비 적용

2.2.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2009년 9월 15일 현재 물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수입품은 C.I.F가격)에 내용년수 및 연간 가동일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비 및 정비비를 산출함.

(금액단위 : 원)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신 규 등 록 측 량		940	
등 록 전 환 측 량		1,126	
도 해 분 할 측 량		564	
수 치 분 할 측 량		5,277	
도해 경계복원측량		246	
수치 경계복원측량		4,523	
지 적 삼 각 측 량		89,278	
도 근 측 량		47,778	
지적 확정 측량	토지 구획정리	1,191,292	
	경지 구획정리	1,848,637	
수 치 화 일		22,376	
좌 표 입 력		18,753	

2.2.2.1 측량종목별 기계경비 일람표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계기름명	신규등록 측량	등록전환 측량	노 회 분환측량	수 치 분환측량	도 경계복원 측량	수 경계복원 측량	지적상각 측량	노 근 측량	지 적 확 정 측 량		수치화일	좌표입력
									노 구회정리	경 구회정리		
면적측정기										1,761,806.8		
광파측거기							54,994.5					
테오도라이트				5,215.3		4,442.6	29,215.4	44,426.8	1,107,579.4			
좌표전계기									15,737.9	12,076.9		
전계척		7.0		3.7				122.1	276.7	212.3		
측도기		30.9								13,404.4		
전자계산기(A)				58.8			1,772.4	3,229.8	11,785.2	15,884.4		
전자계산기(B)	11.4	12.3	7.0			80.9			2,469.2			
무전기							2,395.8					
디지털기	403.1	434.1	248.0									
평판일시	526.4	642.3	309.1		246.3				53,443.9	45,252.2		
상안경							900.6					
제도기											9,510.6	14,769.4
좌표독취기											11,598.5	
컴퓨터											348.8	1,096.2
운영 S/W											918.9	2,888.1
합	940.9	1,126.6	564.1	5,277.8	246.3	4,523.5	89,278.7	47,778.7	1,191,292.3	1,848,697	22,376.8	18,753.7

[계산예]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 일람표에 의한

“신규등록측량” 전자계산기(B)의 경우 1일 기계경비 : 88원, 사용일수 : 0.13일, 88원×0.13일 = 11.4원

2.2.2.2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 일람표

(1일 기계경비/사용일수)

종목별 기계기구명	측 량	측 량	도 회 분할측량	수 치 분할측량	도 회 계측원 측	수 치 계측원 측	지 적 산 각 측	도 회 계 측	지 적 확 정 측 량		수치화일	좌표입력
									토 구 회 정 리	경 구 회 정 리		
면 적 측 정 기							46,584 37.82					
광 파 측 거 기				9,090 6.05								
네 오 도 라 이 트			4,829 1.08		4,829 0.92	4,829 6.05	4,829 9.20	4,829 229.36				
좌 표 전 개 기							2,104 7.48	2,104 5.74				
전 개 측		37 0.19		37 0.10			37 3.30	37 7.48	37 5.74			
측 도 기		309 0.10						309 43.38				
전 자 계 산 기 (A)				420 0.14		420 4.22	420 7.69	420 28.06	420 37.82			
전 자 계 산 기 (B)	88 0.13	88 0.14	88 0.08		88 0.92			88 28.06				
무 전 기						395 6.05						
디 지 탈 구 적 기	3,101 0.13	3,101 0.14	3,101 0.08									
평 관 일 식	483 1.09	483 1.33	483 0.64		483 0.51			483 110.65	483 93.69			
상 안 경						102 8.83						
제 도 기											11,189 0.85	11,189 1.32
좌 표 측 취 기											55,231 0.21	
컴 퓨 터											1,661 0.21	1,661 0.66
운 영 S/W											4,376 0.21	4,376 0.66

2.2.2.3 1일당 기계경비 산출표

(금액단위 : 원)

기계명칭	규격	가격	내용 년수	연간 가동 일수	내 용		합 계	1일 기계 경비
					상 각 비	정 비 비		
면적측정기	DC-2000	42,045,549	4	220	45,390	1,194	46,584	46,584
광파측거기	RED-2L	8,000,000	4	220	8,636	454	9,090	9,090
광파데오도 라이트	GTS313	4,250,000	4	220	4,588	241	4,829	4,829
좌표전개기	600×50×6(mm) 400×42×6(mm)	1,900,000	4	220	2,051	53	2,104	2,104
전 개 척	강제50Cm	35,000	4	220	37	0	37	37
측 도 기	15인치	280,000	4	220	302	7	309	309
전자계산기 (A)	E-650	380,000	4	220	410	10	420	420
전자계산기 (B)	EL-9600	80,000	4	220	86	2	88	88
디 지 탈 구 적 기	X-PLAN 360i	2,800,000	4	220	3,022	79	3,101	3,101
평판 일식	평판·측각 및 케이스, 표간, 조준의	426,000	4	220	459	24	483	483
쌍 안 경	코비카 10배율	90,000	4	220	97	5	102	102
무 전 기	10Km 송수신용	350,000	4	220	377	19	396	396
제 도 기	XF-502	10,100,000	4	220	10,903	286	11,189	11,189
좌표독취기	ADC2000 S/W포함	49,850,000	4	220	53,815	1,416	55,231	55,231
컴 퓨 터	펜티엄급	1,500,000	4	220	1,619	42	1,661	1,661
운영 S/W	도면수치 화일용	3,950,000	4	220	4,264	112	4,376	4,376

상각비 = (가격×0.95)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정비비 = 설내설비 기계 = 가격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 0.025

↳ 현지운반 사용기계 = 가격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 0.050

2.2.3 재료소모품비

재료소모품비는 2009년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지적측량종목별 소모량을 산정하여 계산함.

(금액단위 : 원)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신 규 등 록 전 환		3,163	
등 록 전 환 측 량		3,863	
도 해 분 할 측 량		2,488	
수 치 분 할 측 량		2,684	
도해 경계복원측량		1,969	
수치 경계복원측량		1,894	
지 적 삼 각 측 량		121,234	
도 근 측 량		24,405	
지적 확정 측량	토지 구획정리	360,795	
	경지 구획정리	579,073	
지 적 도 작 성		7,531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켄트지
지 적 도 재 작 성		7,570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켄트지
도 면 작 성		393	
수 치 화 일		3,670	
좌 표 입 력		2,470	

2.2.3.1 측량종목별 재료소모품비 일람표

금액/소모량 (금액단위:원)

측량종목 기준	신규등록 측량	등록진환 측량	도 분 면 측량	수 분 면 측량	도 경 계 부 원 측량	수 경 계 부 원 측량	지 식 삼 각 측량	도 근 측량	지 식 화 장 측 량			지 식 도 작 성	지 식 도 재 작 성	도 면 작 성	수 치 화 입	좌 표 입 력
									토 구 획 정 리	지 구 획 정 리	경 구 획 정 리					
제 도 비 중 비	10,000㎡ 3,000㎡	3,000㎡	10,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00,000㎡	1,500,000㎡	7,000㎡	1 장	1 장	1 장	1 장	1 장
압 미 스 터 판 폴 리 에 스 터 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	7,000	50	1	7,000	1		
측 량 경 과 도 용 지	1	1	1	1	1	1	1	500	10	500	50					
트 레 싱 페 이 퍼	357 2	357 3	357 2	357 2	357 2	357 2	357 1	357 1	10	357	25					
계 산 부 용 지	100	100	100	100		100	357	357	35	100	108	1	357	357	1	
이 농 지 조 서	72 3	72 3	72 3	72 3		72 1	72 28	201	72	1,920	321					
지 형 도							3,100		124	72	35					
오 구	146 0.12	146 0.10	146 0.06	146 0.10	146 0.04	146 0.07	11,430		47	146	49.12	0.35	146	146	0.09	
접 포 대							10									
스 탈 론 테 이 프				566 1.08		566 0.92		566 5.51								
유 리 접 유 계 줄 자	1,366 1.09	1,366 1.33	1,366 0.64		1,366 0.51			566 5.51	111	1,366	93.69					
폴 티 에 스 터 필 름 (#150)															300	300
폴 티 에 스 터 필 름 (#300)															1,200	1,200
제 도 분 면															20,000	20,000
ZIP Drive(나스켓)															0.07	0.04
															17,000	17,000
															0.01	0.01
양 홍 '빅', '제 도 판', '속 량', '집', '인 필'	128	146	76	129	34	30	405	830	2,945	8,246	123	152	23			
합	3,163	3,863	2,488	2,664	1,969	1,894	121,234	24,405	360,795	579,073	7,531	7,570	393	3,670	2,470	

2.2.3.2 재료소모품비 가격표(1)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위	규 격	단 가	비 고
측량결과도용지		장	520mm×420mm(켄트지)	500	
측량결과도용지 (폴리에스터)		장	520mm×420mm(투명)	1,200	
트래싱페이퍼		롤	20m×841mm	357	1롤: 지적도크기 70장 25,000원÷70장=357원
알미늄켄트지		장	(520mm×420mm) 알미늄두께 0.1mm이상	7,000	
폴리에스터켄트지		장	(520mm×420mm) 알미늄두께 0.1mm이상	7,000	
계산부	서식	장	420mm×297mm	100	인쇄용지(특급)70g/m²
이동지	조서	장	297mm×210mm	72	18,000÷250장=72원
지	형 도	장	1 / 50,000	3,100	
양	홍	개	제 도 용	83	5,000원÷60일=83원
먹	물	병	제 도 용	58	3,500원÷60일=58원
제	도 펜	개	제 도 용	60	24,000원÷400일=60원
오	구	개	제 도 용	146	44,000원÷300일=146원
측	량 칩	개	측 량 용	120	3,000원÷25개=120원
제 도 연 필		개	4H ~ 9H	1,250	15,000원÷12개=1,250원
폴리에스터 필름	수치화일	장	# 150	900	300원×3장=900원
	좌표입력	장	# 150	300	300원×1장=300원
폴리에스터필름		장	# 300	1,200	
ZIP Drive(디스켓)		개	100MB	170	17,000원÷100장=170원
제도볼펜	수치화일	개	제 도 용	400	20,000원÷50장=400원
	좌표입력	개	제 도 용	200	20,000원÷100장=200원

2.2.3.2 재료소모품비 가격표(2)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위	규 격	단가	비 고
터 파 기	m ³	1m ³ 당	짓 가	
거 푸 집	m ²	일반합판	짓 가	
콘 크 리 트	m ³	중량배합손비빔	짓 가	
표 석(주석)	개	화강암(9cm×9cm×15cm) +(11cm×11cm×45cm)	짓 가	
표 석(반석)	개	24cm×24cm×8cm	짓 가	
철제 도근점	조	지름(4~6cm×1~2cm) +(1cm×15cm)	짓 가	
각 재	개	4cm×4cm×3m	2,500	
각 재	개	4cm×4cm×50cm	4,500	1,500원×3개=4,500원
철 선	kg	경 2mm(연선)	750	1,500원×0.5kg=750원
측 량 깃 발	장	50cm×40cm	3,500	
유리섬유제 줄자	개	100m(국산)	1,366	41,000÷30일=1,366원
스틸론 테이프	개	100m(국산)	566	170,000÷300일=566원
경계점표지	개	3.5cm×3.5cm×35cm		
경계점표지	개	철못 1호		
경계점표지	개	철못 2호		
경계점표지	개	철못 3호		

2.3 간접측량비

2.3.1 제경비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군 지 역	20%	
시 지 역	23%	
구 지 역	27%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2.3.2 기술료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군 지 역	13%	
시 지 역	13%	
구 지 역	13%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3. 단 가 산 출 표

3. 1 신 규 등 록 측 량

3. 1.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토지 · 1/1200)

1필지당, 토지 3,000 m²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15	인	164,520	189,198		
		지적 산업 기사		0.44	인	150,210	66,092		
		지적 산업 기사		1.47	인	150,210	220,809		
		지 적 기 능 사		1.12	인	104,980	117,578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1.12	인	20,000	22,4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1.12	인	20,000	22,400	
			지적 기능사		1.12	인	20,000	22,400	
			인 부						
		기 계 경 비					940		
		재료소모품비					3,163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118,735			
	기 술 료		13%			92,613			
합 계						876,328			

3. 1.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 기준면적 \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	157,000	207,000	236,000
임 야	1/3000, 1/6000	10,000㎡	191,000	242,000	271,000

- “신규등록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17.9%, 시지역 17.9%, 구지역 17.9%
 임야 : 군지역 17.9%, 시지역 17.9%, 구지역 17.9%
- 도해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측량시 본 단가를 적용한다.
-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경지구획정리 단가를 적용한다.

3. 1. 3 축척별 지역별 공정일람표

지역별 토지 구분	기준 적용계수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직 명	적용계수	1.03	1.25	1.33	1.55	1.47	1.69
지 적 기 사	0.03 (1.09)	0.03 (1.12)	0.04 (1.36)	0.04 (1.45)	0.05 (1.69)	0.04 (1.60)	0.05 (1.84)
지 적 산업기사	0.43	0.44	0.54	0.57	0.67	0.63	0.73
지 적 산업기사	0.34 (1.09)	0.35 (1.12)	0.43 (1.36)	0.45 (1.45)	0.53 (1.69)	0.50 (1.60)	0.57 (1.84)
지 적 기능사	(1.09)	(1.12)	(1.36)	(1.45)	(1.69)	(1.60)	(1.84)
인 부							
소 계	외 업	3.27	3.36	4.35	5.07	4.80	5.52
	내 업	0.8	0.82	1.06	1.25	1.17	1.35
합 계		4.07	4.18	5.41	6.32	5.97	6.87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출 평균한 값.

* ()는 외업임.

3. 2 등 록 전 환 측 량

3. 2.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토지 · 1/1200)

1필지당, 토지 3,000 m²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41	인	164,520	231,973		
		지적 산업 기사		0.69	인	150,210	103,645		
		지적 산업 기사		1.76	인	150,210	264,370		
		지 적 기 능 사		1.37	인	104,980	143,823		
		인 부							
	직접경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1.37	인	20,000	27,4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1.37	인	20,000	27,400	
			지적 기능사		1.37	인	20,000	27,400	
			인 부						
		기 계 경 비					1,126		
		재료소모품비					3,863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148,762			
	기 술 료		13%			116,034			
합 계						1,095,796			

3. 2.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기준면적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m ²		167,000	220,000	251,000

- “등록전환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15.2%, 시지역 15.2%, 구지역 15.2%
- 본 단가에는 임야분할 공정이 포함되었음.
- 수치측량방법에 의한 등록전환측량시 본 단가를 적용함.

3. 2. 3 축척별 지역별 공정일람표

지 역 별 토 지 구 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비 고
			토 지	토 지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600, 1/1000 1/1200, 1/2400	1/600, 1/1000 1/1200, 1/2400	
직 명		적용계수	1.03	1.33	1.47	
지 적 기 사		0.04 (1.33)	0.04 (1.37)	0.05 (1.77)	0.06 (1.96)	()는 외업임
지적 산업기사		0.67	0.69	0.89	0.98	
지적 산업기사		0.38 (1.33)	0.39 (1.37)	0.51 (1.77)	0.56 (1.96)	
지적 기능사		(1.33)	(1.37)	(1.77)	(1.96)	
인 부						
소 계	외 업	3.99	4.11	5.31	5.88	
	내 업	1.09	1.12	1.45	1.60	
합 계		5.08	5.23	6.76	7.48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3. 3 분 할 측 량

3. 3. 1 단 가 산 출 (예)

3. 3. 1. 1 도해측량방법의 경우

군지역(토지 · 1/1200)

1필지당, 토지 3,000 m²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68	인	164,520	111,874		
		지적 산업 기사		0.22	인	150,210	33,046		
		지적 산업 기사		0.91	인	150,210	136,691		
		지 적 기 능 사		0.66	인	104,980	69,287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66	인	20,000	13,2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0.66	인	20,000	13,200	
			지적 기능사		0.66	인	20,000	13,200	
			인 부						
		기 계 경 비					564		
		재료소모품비					2,488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70,180			
	기 술 료		13%			54,740			
합 계							518,470		
1 필 지 당							259,235		

3. 3. 1. 2 수치측량방법의 경우

군지역

1필지당, 토지 3,000 m²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1.11	인	164,520	182,617		
		지적 산업 기사		0.36	인	150,210	54,076		
		지적 산업 기사		1.49	인	150,210	223,813		
		지 적 기 능 사		1.08	인	104,980	113,378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1.08	인	20,000	21,6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1.08	인	20,000	21,600	
			지적 기능사		1.08	인	20,000	21,600	
			인 부						
		기 계 경 비					5,277		
		재료소모품비					2,684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114,777		
	기 술 료			13%			89,526		
합 계							850,948		
1 필 지 당							425,474		

3. 3. 2 기준단가표

3. 3. 2. 1 도해측량 방법에 의한 분할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기준면적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m ²	189,000	246,000	280,000
임 야	1/3000, 1/6000	10,000m ²	238,000	299,000	334,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73.0%, 시지역 72.2%, 구지역 72.2%

임야 : 군지역 73.9%, 시지역 73.9%, 구지역 73.9%

3. 3. 2. 2 수치측량 방법에 의한 분할

(금액단위 : 원)

구분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기준면적			
수 치		3,000m ²	294,000	390,000	446,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69.2%, 시지역 69.2%, 구지역 69.2%

3. 3. 2. 3 분할측량수수료단가 적용기준 필지

- “분할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분할측량수수료는 분할 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의한 면적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에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3. 3. 3 축적별 지역별 공정일람표

3. 3. 3. 1 도해측량방법의 경우

지역별 토지 구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적용계수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직 명		1.03	1.28	1.33	1.58	1.47	1.72
지 적 기 사	0.02 (0.64)	0.02 (0.66)	0.03 (0.82)	0.03 (0.85)	0.03 (1.01)	0.03 (0.94)	0.03 (1.10)
지 적 산업기사	0.21	0.22	0.27	0.28	0.33	0.31	0.36
지 적 산업기사	0.24 (0.64)	0.25 (0.66)	0.31 (0.82)	0.32 (0.85)	0.38 (1.01)	0.35 (0.94)	0.41 (1.10)
지 적 기능사	(0.64)	(0.66)	(0.82)	(0.85)	(1.01)	(0.94)	(1.10)
인 부							
소 계	외 업	1.92	2.46	2.55	3.03	2.82	3.30
	내 업	0.47	0.61	0.63	0.74	0.69	0.80
합 계		2.39	3.07	3.18	3.77	3.51	4.10

· 정도계수는 표준품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적계수를 산출 평균한 값.

* ()는 외업임.

3. 3. 3. 2 수치측량방법의 경우

지역별 직 명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03 (1.08)	0.04 (1.40)	0.04 (1.56)
지적 산업기사		0.36	0.47	0.52
지적 산업기사		0.41 (1.08)	0.53 (1.40)	0.59 (1.56)
지적 기능사		(1.08)	1.40	(1.56)
인 부				
소 계	외 업	3.24	4.20	4.68
	내 업	0.80	1.04	1.15
합 계		4.04	5.24	5.83

* ()는 외업임.

3. 3. 4 지정분할측량 (도해, 수치)

- "지정분할측량"이라 함은 미리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에 50%를 가산 적용한다.

3. 3. 5 지적현황측량 (도해, 수치)

-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 품셈중 성과검사 요구 등에 따른 품을 제외한 품을 적용 계산하며,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적용한다.
- 지적현황측량수수료의 적용기준 및 예시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지]와 [별첨1]에 의한다.
- 현장의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한다.
- 인·허가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를 가산 적용한다.

3. 4 경 계 복 원 측 량

3. 4. 1 단 가 산 출 (예)

3. 4. 1. 1 도해측량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군지역(토지 · 1/1200)

1필지당, 토지500m²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56	인	164,520	92,131		
		지적 산업 기사		0.20	인	150,210	30,042		
		지적 산업 기사		0.60	인	150,210	90,126		
		지 적 기 능 사		0.53	인	104,980	55,639		
		인 부							
	직접경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53	인	20,000	10,6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0.53	인	20,000	10,600	
			지적 기능사		0.53	인	20,000	10,600	
			인 부						
		기 계 경 비					246		
		재료소모품비					1,969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53,588			
	기 술 료		13%			41,798			
합 계						397,339			

3. 4. 1. 2 수치측량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군지역

1필지당, 토지500m²

(금액단위 :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97	인	164,520	159,584		
		지적 산업 기사		0.34	인	150,210	51,071		
		지적 산업 기사		1.05	인	150,210	157,721		
		지 적 기 능 사		0.92	인	104,980	96,582		
		인 부							
	직접경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92	인	20,000	18,400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0.92	인	20,000	18,400	
			지적 기능사		0.92	인	20,000	18,400	
			인 부						
		기 계 경 비					4,523		
		재료소모품비					1,89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92,992			
	기 술 료		13%			72,534			
합 계						692,101			

3. 4. 2 기준단가표

3. 4. 2. 1 도해측량 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기준면적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500m ²	288,000	377,000	429,000
임 야	1/3000, 1/6000	5,000m ²	359,000	457,000	511,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72.6%, 시지역 72.6%, 구지역 72.6%

임야 : 군지역 73.6%, 시지역 73.6%, 구지역 73.6%

3. 4. 2. 2 수측측량 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금액단위 : 원)

구분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기준면적				
수 측	500m ²		479,000	570,000	626,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69.2%, 시지역 69.2%, 구지역 69.2%

3. 4. 2. 3

· “경계복원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률 제2조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3. 4. 3 축척별 지역별 공정일람표

3. 4. 3. 1 도해측량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지역별 토지 구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직 명	적용계수	1.03	1.28	1.33	1.58	1.47	1.72
지 적 기 사	0.03 (0.51)	0.03 (0.53)	0.04 (0.65)	0.04 (0.68)	0.05 (0.81)	0.04 (0.75)	0.05 (0.88)
지적 산업기사	0.19	0.20	0.24	0.25	0.30	0.28	0.33
지적 산업기사	0.07 (0.51)	0.07 (0.53)	0.09 (0.65)	0.09 (0.68)	0.11 (0.81)	0.10 (0.75)	0.12 (0.88)
지적 기능사	(0.51)	(0.53)	(0.65)	(0.68)	(0.81)	(0.75)	(0.88)
인 부							
소 계	외 업	1.53	1.59	1.95	2.04	2.43	2.64
	내 업	0.29	0.30	0.37	0.38	0.46	0.50
합 계	1.82	1.89	2.32	2.42	2.89	2.67	3.14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 ()는 외업임.

3. 4. 3. 2 수치측량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지 역 별 직 명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05 (0.92)	0.06 (1.07)	0.07 (1.14)
지적 산업기사		0.34	0.40	0.43
지적 산업기사		0.13 (0.92)	0.15 (1.07)	0.16 (1.14)
지적 기능사		(0.92)	(1.07)	(1.14)
인 부				
소 계	외 업	2.76	3.21	3.42
	내 업	0.52	0.61	0.66
합 계		3.28	3.82	4.08

* ()는 외업임.

3. 5 지 적 삼 각 측 량

3. 5.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22.46	인	164,520	3,695,119						
					지	적	산	업	기	사	20.98	인	150,210	3,151,406				
					지	적	산	업	기	사	13.67	인	150,210	2,053,371				
					지	적	기	능	사									
					인		부	5.84	인	50,280	293,635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14.88	인	20,000	297,600			
								지	적	산	업	기	사	14.88	인	20,000	297,600	
								지	적	산	업	기	사	13.67	인	20,000	273,4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89,278						
			재			료	소	모	품	비			121,234					
			기				타											
간	접	제			경	비	20%			1,838,706								
		기			술	료	13%			1,434,191								
합					계						13,545,540							
1					점			당				1,354,554						

3. 5.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지 역 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점 당	756,000	773,000	796,000

- “지적삼각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지적측량시행규칙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군지역 55.8%, 시지역 55.8%, 구지역 55.8%
- 지적삼각보조측량 수수료는 본 단가의 50%를 적용함. 다만,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3. 5. 3 공정일람표

(1점당 기준)

지 역 별 직 명	공 정	비 고
지적기사	7.58 (14.88)	()는 외업임
지적산업기사	6.10 (14.88)	
지적산업기사	(13.67)	
지적기능사		
인 부	(5.84)	
소 계	외 업	14.88
	내 업	7.58
합 계	22.46	

3. 6 도 근 측 량

3. 6.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 (방위각법 2등도선)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32.85	인	164,520	5,404,482		
		지적 산업 기사		35.03	인	150,210	5,261,856		
		지적 산업 기사		19.54	인	150,210	2,935,103		
		지 적 기 능 사		18.02	인	104,980	1,891,740		
		인 부		3.31	인	50,280	166,427		
	직접경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17.34	인	20,000	346,800	
			지적 산업 기사		22.85	인	20,000	457,000	
			지적 산업 기사		19.54	인	20,000	390,800	
			지적 기능사		18.02	인	20,000	360,400	
			인 부						
		기 계 경 비					47,778		
		재료소모품비					24,405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3,131,922		
	기 술 료			13%			2,442,899		
합 계							22,861,612		
1 점 당							142,885		

3. 6.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기 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점 당	배 각 법	1등도선	76,000	77,000	94,000
		2등도선	65,000	66,000	81,000
	방위각법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2등도선	54,000	55,000	67,000

- “지적도근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군지역 37.8%, 시지역 37.8%, 구지역 44.8%

3. 6. 3 공정일람표

(1점당 기준)

종 목 별 직 명		방위각법		배 각 법	
		1등도선	2등도선	1등도선	2등도선
지 적 기 사		20.16 (22.54)	15.51 (17.34)	21.71 (24.28)	18.61 (20.81)
지 적 산 업 기 사		15.83 (29.71)	12.18 (22.85)	17.05 (31.99)	14.62 (27.42)
지 적 산 업 기 사		(25.40)	(19.54)	(27.36)	(23.45)
지 적 기 능 사		(23.43)	(18.02)	(25.23)	(21.62)
인 부		(4.30)	(3.31)	(4.63)	(3.97)
소 계	외 업	105.38	81.06	113.49	97.27
	내 업	35.99	27.69	38.76	33.23
합 계		141.37	108.75	152.25	130.50

* ()는 외업임.

3. 7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 7.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

1지구당 200,000m²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315.22	인	164,520	51,859,994		
		지적 산업 기사	320.79	인	150,210	48,185,866		
		지적 산업 기사	317.63	인	150,210	47,711,202		
		지 적 기 능 사	221.30	인	104,980	23,232,074		
		인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229.36	인	20,000	4,587,200	
			지적 산업 기사	229.36	인	20,000	4,587,200	
			지적 산업 기사	237.42	인	20,000	4,748,400	
			지적 기능사	221.30	인	20,000	4,426,000	
			인부					
		기계경비					1,191,292	
		재료소모품비					360,795	
		기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34,197,827		
	기 술 료		13%			26,674,305		
합 계						251,762,155		
1 m² 당						1,258.81		

3. 7.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기 준 \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707.5	723.7	783.9

- “토지구획정리지적확정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군지역 56.2%, 시지역 56.2%, 구지역 59.1%
-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기초측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라항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3. 7. 3 공정일람표

(1지구당 200,000m²기준)

직 명 \ 지 역 별	공 정	비 고
지적기사	85.86 (229.36)	()는 외업임
지적산업기사	91.43 (229.36)	
지적산업기사	80.21 (237.42)	
지적기능사	(221.30)	
인 부		
소 계	외 업	229.36
	내 업	91.43
합 계	320.79	

3. 8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 8. 1 단 가 산 출 (예)

군지역

1지구당 1,500,000m²기준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82.98	인	164,520	30,103,870		
		지적 산업 기사		188.62	인	150,210	28,332,610		
		지적 산업 기사		186.27	인	150,210	27,979,617		
		지 적 기 능 사		93.69	인	104,980	9,835,576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93.69	인	20,000	1,873,800	
			지적 산업 기사		93.69	인	20,000	1,873,800	
			지적 산업 기사		93.69	인	20,000	1,873,800	
			지적 기능사		93.69	인	20,000	1,873,800	
			인 부						
		기 계 경 비					1,848,637		
		재료소모품비					579,073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19,250,335			
	기 술 료		13%			15,015,261			
합 계							140,440,179		
1 m ² 당							93.62		

3. 8.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지 역 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51.5	52.7	57.0

- “경지구획정리지적확정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군지역 55.0%, 시지역 55.0%, 구지역 57.8%
-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기초측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8. 3 공정일람표

(1지구당 1,500,000m²기준)

지 역 별 직 명	공 정	비 고
지적기사	89.29 (93.69)	()는 외업임
지적산업기사	94.93 (93.69)	
지적산업기사	92.58 (93.69)	
지적기능사	(93.69)	
인 부		
소 계	외 업	93.69
	내 업	94.93
합 계	188.62	

3. 9 지 적 도 작 성

3. 9. 1 단가산출 (예)

군지역 (1/1200)

1 장 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21	인	164,520	34,549		
		지적 산업 기사		0.89	인	150,210	133,687		
		지적 산업 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 부						
		기 계 경 비							
		재료소모품비					7,531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33,647			
	기 술 료		13%			26,245			
합 계						235,659			

3. 9. 2 기준단가표

(1장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축 척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500,1/600, 1/1000,1/1200 1/2400	알미늄 및 켄트지	44,000	45,000	46,000
임 야	1/3000,1/6000		55,000	56,000	58,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18.6%, 시지역 18.6%, 구지역 18.6%
임야 : 군지역 19.0%, 시지역 19.0%, 구지역 19.0%
- 지적도 작성방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한다.

3. 9. 3 축척별 공정일람표

축 척 별 직 명		기 준	1/500,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비 고
		적용계수	1.03	1.28	
지 적 기 사		0.20	0.21	0.26	()는 외업임
지 적 산 업 기 사		0.86	0.89	1.10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소 계	외 업				
	내 업	1.06	1.10	1.36	
합 계		1.06	1.10	1.36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3. 10 지 적 도 재 작 성

3. 10. 1 단가산출(예)

군지역 (토지 · 1/1200)

1 장 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23	인	164,520	37,840		
		지적 산업 기사		1.10	인	150,210	165,231		
		지적 산업 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 부						
		기 계 경 비							
		재료소모품비					7,570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40,614			
	기 술 료		13%			31,679			
합 계						282,934			

3. 10. 2 기준단가표

(1장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축 척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알미늄 및 첸트지	52,000	54,000	55,000
임 야	1/3000, 1/6000		66,000	68,000	70,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18.5%, 시지역 18.5%, 구지역 18.5%

임야 : 군지역 18.9%, 시지역 18.9%, 구지역 18.9%

- 지적도 재작성방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한다.

3. 10. 3 축척별 공정일람표

축 척 별 직 명		기 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비 고
		적용계수	1.03	1.28	
지 적 기 사		0.22	0.23	0.28	()는 외업임
지 적 산 업 기 사		1.07	1.10	1.37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소 계	외 업				
	내 업	1.29	1.33	1.65	
합 계		1.29	1.33	1.65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3. 11 도 면 작 성

3. 11. 1 단가산출(예)

군지역 (토지 · 1/1200)

1 장 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0.24	인	150,210	36,050	
		지적 산업 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 부					
		기 계 경 비						
		재료소모품비					393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7,210		
	기 술 료					5,624		
합 계						49,277		

3. 11. 2 기준단가표

(1장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축 척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500,1/600, 1/1000,1/1200 1/2400	지적도크기	9,000	9,000	10,000
임 야	1/3000,1/6000		12,000	12,000	13,000

- 본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18.8%, 시지역 18.8%, 구지역 18.8%

임야 : 군지역 20.5%, 시지역 20.5%, 구지역 20.5%

3. 11. 3 축척별 공정일람표

축 척 별 직 명		기 준	1/500,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비 고
		적용계수	1.03	1.28	
지 적 기 사					()는 외업임
지 적 산 업 기 사		0.23	0.24	0.31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소 계	외 업				
	내 업	0.23	0.24	0.31	
합 계		0.23	0.24	0.31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3. 12 수 치 화 일

3. 12. 1 단가산출(예)

군지역 (토지 · 1/1200)

1 장 당

(금액단위 : 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04	인	164,520	6,581		
		지적 산업 기사		0.04	인	150,210	6,008		
		지적 산업 기사		0.15	인	150,210	22,532		
		지 적 기 능 사		0.36	인	104,980	37,793		
		인 부							
	직접경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 부						
		기 계 경 비					22,376		
		재료소모품비					3,67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4,583			
	기 술 료		13%			11,375			
합 계						124,918			

3. 12. 2 기준단가표

(1장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축 척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500,1/600, 1/1000,1/1200 1/2400	알미늄 및 켄트지	89,000	91,000	93,000
임 야	1/3000,1/6000		133,000	136,000	140,000

· 본 단가는 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토지 : 군지역 71.5%, 시지역 71.5%, 구지역 71.5%

임야 : 군지역 88.7%, 시지역 88.7%, 구지역 88.7%

3. 12. 3 축척별 공정일람표

축 척 별 직 명		기 준	1/500,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비 고
		적용계수	1.03	1.28	
지 적 기 사		0.04	0.04	0.05	()는 외업임
지 적 산 업 기 사		0.04	0.04	0.05	
지 적 산 업 기 사		0.15	0.15	0.19	
지 적 기 능 사		0.35	0.36	0.45	
소 계	외 업				
	내 업	0.58	0.59	0.74	
합 계		0.58	0.59	0.74	

· 정도계수는 표준품셈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지별 축척계수를 산술 평균한 값.

3. 13 좌 표 입 력

3. 13. 1 단가산출(예)

군지역

1 장 당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량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04	인	164,520	6,581		
		지적 산업 기사		0.09	인	150,210	13,519		
		지적 산업 기사		0.05	인	150,210	7,511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 부						
		기 계 경 비					18,753		
		재료소모품비					2,470		
		기 타							
간 접 측량비	제 경 비		20%			5,522			
	기 술 료		13%			4,307			
합 계						58,663			

3. 13. 2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기 준	크 기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장 당	지 적 도 크 기	35,000	35,000	36,000

· 본 단가는 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에 아래 적용율을 적용함.

군지역 58.9%, 시지역 58.9%, 구지역 58.9%

3. 13. 3 지역별 공정일람표

지 역 별 직 명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비 고
지 적 기 사	0.04	0.04	0.04	
지 적 산 업 기 사	0.09	0.09	0.09	
지 적 산 업 기 사	0.05	0.05	0.05	
지 적 기 능 사				

* ()는 외업임.

4.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1. 신규등록측량

1.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 기준면적 \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구분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	157,000	207,000	236,000
임 야	1/3000, 1/6000	10,000㎡	191,000	242,000	271,000

1.2 기준면적

기준단가는 1필지당 토지는 3,000m², 임야는 10,000m²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구 분	가산회수						
	0 회	1	2	3	4	5	6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4	1.5	1+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숫점이하는 절상

1.3 연속지 및 집단지의 체감계수

연속지 또는 집단지인 때에는 본품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구 분 \ 내 용	50필지까지	50필지초과	100필지초과	500필지초과	1,000필지초과
연 속 지 신규등록	1.0	0.7	0.6	0.5	0.4
집 단 지 신규등록	1.0	0.9	0.8	0.7	0.5

○ 연속지, 집단지 신규등록이라 함은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접속된 측량지를 말한다.

1.3.1 연속지 신규등록측량

(금액단위 : 원)

지 역 별	내 용		50 필지까지	50 필지초과	100 필지초과	500 필지초과	1,000 필지초과
군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57,000	112,000	97,000	82,000	66,000
	임 야	1/3000, 1/6000	191,000	146,000	131,000	115,000	100,000
시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07,000	160,000	145,000	129,000	115,000
	임 야	1/3000, 1/6000	242,000	195,000	179,000	164,000	149,000
구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36,000	189,000	172,000	157,000	140,000
	임 야	1/3000, 1/6000	271,000	224,000	208,000	192,000	175,000

1.3.2 집단지 신규등록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별	내 용		50	50	100	500	1,000
	토지구분		필지까지	필지초과	필지초과	필지초과	필지초과
군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57,000	142,000	126,000	112,000	82,000
	임 야	1/3000, 1/6000	191,000	175,000	160,000	146,000	115,000
시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07,000	192,000	176,000	160,000	129,000
	임 야	1/3000, 1/6000	242,000	226,000	211,000	195,000	164,000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36,000	220,000	204,000	189,000	157,000
	임 야	1/3000, 1/6000	271,000	255,000	239,000	224,000	192,000

1.4 적용시 유의사항

- 가. 도해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측량시 본 단가를 적용한다.
- 나.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셈을 별도 가산한다.
- 다. 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현지측량할 경우에는 도서측량에 필요한 기계경비 및 선박 대여료를 별도 계상한다.
- 라. 측량수수료에는 경계점표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경지구획정리 단가를 적용한다.

2. 등록전환측량

2.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기준면적	지역별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m ²	167,000	220,000	251,000

- 본 단가에는 임야분할공정이 포함되었음.
- 수치측량방법에 의한 등록전환 측량시는 본 단가를 적용함.

2.2 기준면적

기준단가는 1필지당 3,000m²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가산회수 구 분	0 회	1	2	3	4	5	6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4	1.5	1+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숫점이하는 절상

2.3 연속지, 집단지 체감계수

연속지 또는 집단지인 때에는 본품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구 분 \ 내 용	50필지까지	50필지초과	100필지초과	500필지초과	1,000필지초과
연 속 지 등록전환	1.0	0.7	0.6	0.5	0.4
집 단 지 등록전환	1.0	0.9	0.8	0.7	0.5

○ 연속지, 집단지 등록전환이라 함은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접속된 측량지를 말한다.

2.3.1 연속지 등록전환측량

(금액단위 : 원)

지 역 별	내 용		50 필지까지	50 필지초과	100 필지초과	500 필지초과	1,000 필지초과
토지구분							
군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67,000	118,000	103,000	86,000	70,000
시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20,000	170,000	154,000	137,000	121,000
구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51,000	200,000	182,000	165,000	148,000

2.3.2 집단지 등록전환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별	내 용		50	50	100	500	1,000
	토지구분		필지까지	필지초과	필지초과	필지초과	필지초과
군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67,000	151,000	134,000	118,000	86,000
시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20,000	204,000	187,000	170,000	137,000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51,000	233,000	216,000	200,000	165,000

2.4 적용시 유의사항

-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셈을 별도 가산한다.
- 측량수수료에는 경계점표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분할측량

3.1 기준단가표

3.1.1 도해측량 방법에 의한 분할

(금액단위 : 원)

지 역 별 기준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구분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	189,000	246,000	280,000
임 야	1/3000, 1/6000	10,000㎡	238,000	299,000	334,000
농 로 분 할 측 량		1필지당	151,000		

3.1.2 수치측량 방법에 의한 분할

(금액단위 : 원)

지역별 기준면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3,000m ²	294,000	390,000	446,000

3.2 기준면적

기준단가는 분할후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하였으며, 분할후의 1필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구 분 \ 가산회수	0 회	1	2	3	4	5	6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4	1.5	1+0.1n

○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 소숫점이하는 절상

3.3 분할측량수수료단가 적용기준 필지

분할측량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증가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3.4 연속지 및 집단지의 체감계수

연속지 또는 집단지인 때에는 본품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구 분 \ 내 용	분할후 50 필지 까지	분할후 50 필지 초과	분할후 100 필지 초과	분할후 500 필지 초과	분할후 1,000 필지 초과
연속지분할	1.0	0.7	0.6	0.5	0.4
집단지분할	1.0	0.9	0.8	0.7	0.5

가. 연속지 분할측량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및 지구계 분할측량지를 말한다.

나. 집단지라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접속 집단된 측량지를 말한다.

3.4.1 연속지 분할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 별	내 용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토지구분						
군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89,000	134,000	115,000	98,000	80,000
	임 야	1/3000, 1/6000	238,000	183,000	162,000	145,000	127,000
	수 치		294,000	208,000	179,000	149,000	118,000
시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46,000	191,000	174,000	154,000	136,000
	임 야	1/3000, 1/6000	299,000	243,000	224,000	205,000	187,000
	수 치		390,000	301,000	271,000	241,000	213,000
구 지 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80,000	223,000	203,000	185,000	167,000
	임 야	1/3000, 1/6000	334,000	277,000	257,000	238,000	220,000
	수 치		446,000	353,000	322,000	293,000	261,000

3.4.2 집단지 분할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별	내 용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토지구분						
군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89,000	172,000	152,000	134,000	98,000
	임 야	1/3000, 1/6000	238,000	219,000	200,000	183,000	145,000
	수 치		294,000	265,000	235,000	208,000	149,000
시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46,000	228,000	208,000	191,000	154,000
	임 야	1/3000, 1/6000	299,000	281,000	261,000	243,000	205,000
	수 치		390,000	362,000	331,000	301,000	241,000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80,000	262,000	242,000	223,000	185,000
	임 야	1/3000, 1/6000	334,000	316,000	295,000	277,000	238,000
	수 치		446,000	415,000	385,000	353,000	293,000

3.5 지정분할측량

"지정분할측량" 이라함은 미리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에 50%를 가산 적용한다.

3.6 적용시 유의사항

가. 소관청이 다른 때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산한다.

나.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별도로 가산한다.

다.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상 농로라함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력(정부 지원사업포함)에 의한 도로 개설을 말한다.

라. 측량수수료에는 경계점표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지적현황측량

4.1 기준단가표

4.1.1 도해측량 방법에 의한 현황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3,000m ²	170,000	221,000	252,000
임 야	1/3000, 1/6000	10,000m ²	214,000	269,000	301,000

4.1.2 수치측량 방법에 의한 현황

(금액단위 : 원)

기준면적	지역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3,000m ²	265,000	351,000	401,000

4.2 기준면적

분할측량 종목과 같음

4.3 기준면적 초과 가산계수 및 연속지·집단지의 체감계수는 분할측량

종목과 같음

4.3.1 연속지 지적현황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별	내 용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토지구분						
군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70,000	121,000	103,000	88,000	72,000
	임 야	1/3000, 1/6000	214,000	165,000	146,000	130,000	114,000
	수 치		265,000	187,000	161,000	134,000	106,000
시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21,000	172,000	157,000	139,000	122,000
	임 야	1/3000, 1/6000	269,000	219,000	202,000	184,000	168,000
	수 치		351,000	271,000	244,000	217,000	192,000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52,000	201,000	183,000	166,000	150,000
	임 야	1/3000, 1/6000	301,000	249,000	231,000	214,000	198,000
	수 치		401,000	318,000	290,000	264,000	235,000

4.3.2 집단지 지적현황측량

(금액단위 : 원)

지역별	내 용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토지구분						
군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170,000	155,000	137,000	121,000	88,000
	임 야	1/3000, 1/6000	214,000	197,000	180,000	165,000	130,000
	수 치		265,000	238,000	211,000	187,000	134,000
시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21,000	205,000	187,000	172,000	139,000
	임 야	1/3000, 1/6000	269,000	253,000	235,000	219,000	184,000
	수 치		351,000	326,000	298,000	271,000	217,000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252,000	236,000	218,000	201,000	166,000
	임 야	1/3000, 1/6000	301,000	284,000	265,000	249,000	214,000
	수 치		401,000	373,000	346,000	318,000	264,000

4.4 지정현황측량

인·허가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를 가산 적용한다.

4.5 적용시 유의사항

○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경계(선) 현황

① 필지내 경계(선) 기준

② 원필지 면적 기준

③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은 경우(면적측정)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 적용

④ 기준면적초과시 면적가산계수 적용

⑤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현황의 경우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내 경계(선) 증가시마다 50% 가산 적용

⑥ 인·허가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며 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를 가산 적용

2) 건축물·구조물 현황

① 건축물, 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하며, 이 경우 2필지 이상에 걸친 때에는 1구획 적용. 다만 건축물, 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같게 적용

② 실측하는 현황면적에 의거 수수료 적용(면적가산계수 적용)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50% 가산 적용

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층을 제외한 다른 층

나)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단위

④ 현장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한다.

3) 점 현황

① 실측하는 점(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수료 적용

가) 1필지내 1점일 경우 : 기본면적 수수료

나) 1필지내 2점 이상일 경우 : 증가되는 점마다 기본면적 수수료 단가에 50% 가산 적용

5. 경계복원측량

5.1 기준단가표

5.1.1 도해측량 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금액단위 : 원)

토지구분	기준면적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 지	1/600, 1/1000 1/1200, 1/2400	500m ²	288,000	377,000	429,000
임 야	1/3000, 1/6000	5,000m ²	359,000	457,000	511,000

5.1.2 수치측량 방법에 의한 경계복원

(금액단위 : 원)

지역별 기준면적	지 역 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500m ²	479,000	570,000	626,000

5.2 기준면적

기준단가 기준면적은 1필지당 토지는 500m², 임야는 5,000m²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구 분 \ 가산회수	0 회	1	2	3	4	5	6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4	1.5	1+0.1n

$$\circ n = (\text{대상면적} - \text{기준면적}) \div \text{기준면적} \quad * \text{소숫점이하는 절상}$$

5.3 적용시 유의사항

-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점의 좌표를 지표상에 복원할 경우에는 이품에 80%를 가산한 품으로 산출한다.
- 나.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품을 별도 가산한다.
- 다. 경계정정 측량을 한 경우에는 본품을 적용한다.
- 라. 측량수수료에는 경계점표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지적삼각측량

6.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지역별 기준면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점당	756,000	773,000	796,000

○ 지적삼각보조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측량 기준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6.2 적용시 유의사항

가.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산한다.

나. 벌채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7. 도근측량

7.1 기준단가표

(금액단가 : 원)

기 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점당	배 각 법	1등도선	76,000	77,000	94,000
		2등도선	65,000	66,000	81,000
	방위각법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2등도선	54,000	55,000	67,000

7.2 적용시 유의사항

가. 기준단가에는 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 측량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 측량비를 별도 가산한다.

나. 기준단가에는 도근점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표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 가산한다.

8. 지적확정측량

8.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8.1.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종 목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 당	707.5	723.7	783.9

8.1.2 기준면적초과 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20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구 분 \ 면적별	20만㎡ 이 하	2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초과
토지구획정리	1.0	0.9	0.8	0.7	0.6	0.6

(금액단위 : 원)

구 분 \ 면적별	20만㎡ 이 하	2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707.5	637.1	566.8	496.5	426.2	426.2
시 지 역	723.7	651.8	579.9	507.9	436.0	436.0
구 지 역	783.9	706.0	628.1	550.1	472.2	472.2

8.1.3 말박기측량 수수료(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단위 : 1㎡당 / 원)

구 분 \ 면적별	20만㎡ 이 하	2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353.7	318.5	283.4	248.2	213.1	213.1
시 지 역	361.8	325.9	289.9	253.9	218.0	218.0
구 지 역	391.9	353.0	314.0	275.0	236.1	236.1

8.1.4 적용시 유의사항

- 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나. 소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산한다.
- 다.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라.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에 50%를 적용한다.(기준면적 체감계수 적용, 8.1.3참조)
-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8.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8.2.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종 목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m ² 당	51.5	52.7	57.0

8.2.2 기준면적초과 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5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구 분 \ 면적별	300만m ² 이 하	300만m ² ~500만m ²	500만m ² ~800만m ²	800만m ² ~1,000만m ²	1,000만m ² 초 과
경지구획정리	1.0	0.9	0.8	0.7	0.6

(금액단위 : 원)

구 분 \ 면적별	300만m ² 이 하	300만m ² ~500만m ²	500만m ² ~800만m ²	800만m ² ~1,000만m ²	1,000만m ² 초 과
군 지 역	51.5	46.4	41.4	36.3	31.3
시 지 역	52.7	47.5	42.3	37.1	32.0
구 지 역	57.0	51.4	45.8	40.2	34.6

8.2.3 적용시 유의사항

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나. 소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산한다.

다.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9. 지적도 작성

9.1 지적도 작성

9.1.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군	시	구
	축척별	단위	기준			
지적도 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44,000	45,000	46,000
	1/3000, 1/6000		폴리에스터	55,000	56,000	58,000

9.1.2 기준필지 초과 가산계수

기준단가는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셈을 가산한다.

구 분	가산계수(n)	0 회	1	2	3	4	5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 자동제도기에 의한 도면작성은 기준필지 초과 가산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9.1.3 적용시 유의사항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가산한다.

9.2 지적도 재작성

9.2.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군	시	구
	축척별	단위	기준			
지적도 재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52,000	54,000	55,000
	1/3000, 1/6000		폴리에스터	66,000	68,000	70,000

9.2.2 기준필지 초과 가산계수

기준단가는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셈을 가산한다.

구 분	가산계수(n)	0 회	1	2	3	4	5회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 자동제도기에 의한 도면작성은 기준필지 초과 가산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9.1.3 적용시 유의사항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가산한다.

10. 도면작성

10.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축 척 별	단 위	기 준			
도면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크 기	9,000	9,000	10,000
	1/3000, 1/6000			12,000	12,000	13,000

10.2 적용시 유의사항

- 가.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는 도면작성시에는 재료비를 별도 가산한다.
- 나. 기준규격의 1/4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기준단가의 50%를 적용한다.

11. 지적(임야)도전산화 업무

11.1 수치화일

11.1.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축 척 별	단 위	기 준			
수치화일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크 기	89,000	91,000	93,000
	1/3000, 1/6000			133,000	136,000	140,000

11.1.2 적용시 유의사항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는 수치화일 작성시는 재료비를 별도 가산한다.

11.2 좌표입력

11.2.1 기준단가표

(금액단위 : 원)

기 준	크 기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장 당	지적도크기	35,000	35,000	36,000

12. 기타사항

가. 제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도 부가가치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1999.1.15부터 적용시행)

나.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경계점표지대는 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2003. 2. 1부터 무상제공 시행)

5.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5. 1 2010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1. 측량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 필지	3,000	157,000	207,000	236,000
	임 야 (도해)	1/3000, 1/6000	1 필지	10,000	191,000	242,000	271,000
	·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등록전환 측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 필지	3,000	167,000	220,000	251,000
분할측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 필지 (분할후)	3,000	189,000	246,000	280,000
	임 야 (도해)	1/3000, 1/6000	1 필지 (분할후)	10,000	238,000	299,000	334,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3,000	294,000	390,000	446,000
	농 로 분 할 측 량		1 필지당 (분할후)		151,000		
경계복원 측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 필지	500	288,000	377,000	429,000
	임 야 (도해)	1/3000, 1/6000	1 필지	5,000	359,000	457,000	511,000
	수 치		1 필지	500	479,000	570,000	626,000
지적현황 측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 필지 (분할후)	3,000	170,000	221,000	252,000
	임 야 (도해)	1/3000, 1/6000	1 필지 (분할후)	10,000	214,000	269,000	301,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3,000	265,000	351,000	401,000

2010 지적측량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 측 량	1 점 당			756,000	773,000	796,000
도근측량	배각법	1 점당	1등도선	76,000	77,000	94,000
			2등도선	65,000	66,000	81,000
	방위각법	1 점당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2등도선	54,000	55,000	67,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 당	707.5	723.7	783.9
	경지구획정리			51.5	52.7	57.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2.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측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작 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4,000	45,000	46,000
	1/3000, 1/6000			55,000	56,000	58,000
지적도 재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52,000	54,000	55,000
	1/3000, 1/6000			66,000	68,000	70,000
도면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9,000	10,000
	1/3000, 1/6000			12,000	12,000	13,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3.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화일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89,000	91,000	93,000
	1/3000, 1/6000			133,000	136,000	140,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5,000	36,000

※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1999.1.15부터 적용시행)

※ 경계점표지대는 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2003.2.1부터 무상제공 시행)

6. 부 록

6. 1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

1994. 12. 6 내무부예규 제762호 제정
1996. 1. 10 내무부예규 제776호 개정
1997. 9. 26 내무부예규 제786호 개정
2000. 9. 18 행정자치부예규 제 58호 개정
2001. 1. 20 행정자치부예규 제 71호 개정
2003. 3. 10 행정자치부예규 제109호 전문개정
2004.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157호 개정
2006. 12. 27 행정자치부예규 제224호 개정
2007. 12. 26 행정자치부예규 제262호 개정
2008. 4. 16 국토해양부예규 제 4호 개정
2008. 12. 22 국토해양부예규 제 26호 개정
2009. 8. 21 국토해양부예규 제110호 개정
2009. 12. 28 국토해양부예규 제151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
2. 직접경비 = 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3.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은 별지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의 단가산정기준 및 시행일 등)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이 규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단가는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단위(5전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③수수료단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시·군·구지역별로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도농통합시』지역의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시지역 수수료, 읍면지역은 군지역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구지역의 동지역은 구지역수수료를 적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말하며, 노임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측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여비·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2. 기계경비는 당해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3.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하며 직접 인건비의 50%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제조사사업, 통일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를 말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이내로 계상한다.

제9조(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다.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라.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
가의 10%를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
가의 30%를 차감한 잔액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3.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
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연기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
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
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또는 지적현황측량
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착오접
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

5.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

6. 수수료규정의 적용 착오로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다 수입한 수수료 금액

7.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제10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지적현황측량은 분할측량품셈 중 성과검사요구 등에 따른 품을

제외한 품을, 환지지시측량은 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하고,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검토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수수료단가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수료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산불·폭설·태풍피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를 발급받은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당해연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사회 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지적공사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인가된 수수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6. 2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 직접측량비

가) 직접인건비

- 1) 수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측량종목의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지역별, 면적가산계수, 연속지 및 집단지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한다.
- 2)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자격별 인건비로 한다.
- 3) 금액 = 수량 × 단가

나) 직접경비

1) 현장여비

(가) 수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측량종목의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지역별, 면적가산계수, 연속지 및 집단지체감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한다.

(나) 단가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일비를 적용한다.

(다) 금액 = 수량 × 단가

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감가상각 및 정비비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계경비를 당해 측량종목별 금액을 합산 한다.

(가) 상각비계산=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95

(나) 정비비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25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50

(다) 금액=(상각비+정비비)×사용일수(표준품셈의 일수)

3) 재료소모품비

(가) 재료소모품비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으로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한다.

(나) 금액=조사가격× 사용량

2. 간접측량비

가. 제경비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기술료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제척지에 대한 측척 변경측량은 지적확정측량수수료를, 도해지역내의 경우는 주위에 등록된 토지의 측척에 의한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초측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한 점수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 가산한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지적확정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5.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6. 여비가산

- 가. 도서지역 등에 측량을 위하여 특별히 선박을 임차 할 경우에는 선박 임차료 실비를 가산한다.
- 나. 의뢰자의 특별요청에 의하여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관외에서 소요되는 여비 실비를 가산한다.

7. 면적적용

- 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 나.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면적 수수료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기지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철도용지가 여러 도곽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번의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곽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8. 연속지, 집단지측량

- 가. 연속지 및 집단지에 대하여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하여 단가가 저렴한 축척부터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한다.
- 나. 연속지 및 집단지측량은 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적용한다.

9. 면적체감계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이상의 토지개발사업지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면적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0. 지정분할측량(도해, 수치)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에 50%를 가산 적용

11. 지적현황측량

가.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품셈 중 성과검사요구 등에 따른 품을 제외한 품을 적용 계산하며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첨1에 의한다.

1) 경계(선) 현황

①필지내 경계(선) 기준

②원필지 면적 기준

③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은 경우(면적측정)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 적용

④기준면적초과시 면적가산계수 적용

⑤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현황의 경우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내 경계(선) 증가시마다 50% 가산 적용

⑥인·허가 면적이나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 가산 적용

2)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①건축·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하며, 이 경우 2필지 이상에 걸친 때에는 1구획 적용. 다만 건축·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함께 적용

②실측하는 현황면적에 의거 수수료 적용(면적가산계수 적용)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50% 가산 적용

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총별로 측량할 때 1개층을 제외한 다른 층

나)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단위

3) 점 현황

①실측하는 점(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수료 적용

가) 1필지내 1점일 경우 : 기본면적 수수료

나) 1필지내 2점 이상일 경우 : 증가되는 점마다 기본면적 수수료 단가에 50% 가산 적용

나. 지적현황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선과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목변경시점의 측량수수료와 기 납부한 측량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측량하여야 하나 전산과 일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건물현황 등을 추가로 재측량 할 경우에는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12. 농로분할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상 농로라 함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력(정부지원사업포함)에 의한 도로개설을 말한다.

13. 지적(임야)도전산화 업무

수치화일, 좌표입력 업무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적(임야)도전산화 업무에 한하여 본 단가산출표규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14.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감면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 1) 해당 임야의 한쪽 일부분만 인·허가 업무를 수반하였거나, 해당 임야의 중간 일부만 인·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등록전환 면적 적용
- 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지목이 서로 다른 수 필지로 분할 될 경우
 - ①전 필지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 수수료는 인·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
 - ②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

나. 인·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수수료만 적용한다.

15. 지적삼각보조측량수수료 적용

지적삼각보조측량수수료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 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16.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방법은 별첨2에 의한다.

17.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시 수수료 적용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시 경계복원측량수수료를 적용하되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분된 필지의 적은 면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시에 지적선을 경계복원 하였을 때 경계복원한 필지의 면적으로 하되 별도의 경계복원수수료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8.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적용

- 가. 분할측량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시 경계복원측량수수료는 분할선에 의하여 구분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전체필지의 경계복원을 할 경우에는 원 면적으로 한다.
- 나. 동일소유의 연접한 필지의 합산한 면적이 기본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19. 농·어촌지역 수수료 감면적용

농·어촌(읍면지역)지역의 지목이 전·답인 경계점좌표등록지역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감면 적용한다.

20. 1지번 2종목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

1지번에 2종목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 종목당 6만원(여비)을 감면 적용한다.

【별첨1】

6. 3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1. 큰 거

-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나.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표준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지적현황측량은 분할측량 품셈을, 환지지시측량은 경계복원측량 품셈을 적용하고...』에 의하여 분할측량 품셈을 적용

2. 공정표

가. 분할측량품셈과 동일함

- 1) 기준면적,정도계수,난이도계수 : 분할측량 품셈을 적용
- 2) 성과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음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3. 수수료 적용기준

가. 지적현황측량수수료 적용의 기본원칙

- 지적현황측량은 분할측량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적용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공부정리에 필요한 일 부작업이 생략된 경우도 포함)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 수로 한다.
- 적용유형은 경계(선)현황,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점현황으로 구분한다.
- 원필지면적 또는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초과시에는 면적가 산계수를 적용하며, 연속지, 집단지일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되 면적가산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점현황시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필지내 현황이 증가될 때마다 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50%를 가산 적용한다.
-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건축·구조물, 점유현황은 1구획마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유형별 수수료 적용기준

1) 경계(선) 현황

- 필지내 경계(선)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초과시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현황일 경우(위치만 표시)에는 기본단가로 1선을 적용하고 1필지내 선증가시마다 50%를 가산 적용한다.
- 현황선 일부가 경계와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허가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며, 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를 가산 적용한다.
- 도상에서 선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에는 기본단가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하수도선, 독,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말뚝 등에 의한 현황은 경계(선)현황에 해당한다.

2) 구획(건축·구조물, 점유)현황

- 구획은 건축·구조물 및 점유형태의 현황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필지내 독립된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형태 단위로 1구획으로 하며 수필지에 걸친 때에도 1구획을 적용하되 지번별로 각각의 면적을 구분하여 측정할 때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단독으로 면적측정한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을 분할식으로 면적측정 합산하여 1구획으로 성과 제출한 때에도 같다.
-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의 층을 제외한 다른 층 및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에 대하여는 50%를 적용한다.
- 분할식이 아닌 위치만 표시하는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의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 축척이 상이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현황에 대하여는 분할식으로 각각 면적을 산출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하며, 동일 축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신·축도품을 가산 적용한다. 다만,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 건축·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이 필지경계선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필지 원면적을 기준으로 1구획을 적용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부만 지정하여 현황측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수반되는 진입로 등의 도로현황은 1구획으로 적용하되 진입로 실측면적에 대하여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3) 점 현황

-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현황은 점을 필지수로 하여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내 증가되는 점은 기본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전신주, 묘지, 철탑, 소화전, 나무 등과 같이 점형태로 표시되는 현황은 점현황으로 구분한다.
-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4) 혼합형태의 현황이 연속지·집단지에 해당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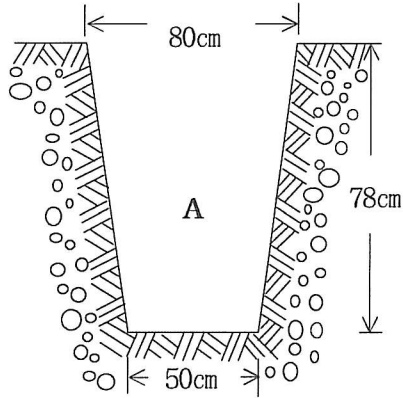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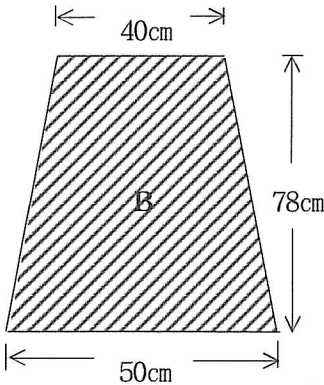
- 경계(선), 구획,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집단지일때에는 각 유형별로 기준에 맞게 적용한 후 전체필수를 가지고 50% 적용분을 기본 50필지에 우선 적용한 다음 순차적으로 나머지 필수에 적용하고 면적가산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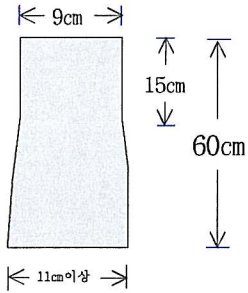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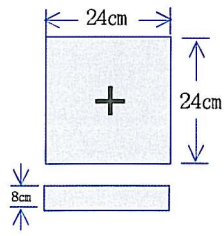
6. 4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가. 표석사용의 경우

(1점당)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가. 터파기		원	* 터파기 - 호박돌 섞인 토사, 경질토사, 보통토사 $= \left(\frac{(0.80\text{m} \times 0.80\text{m})}{2} + \frac{(0.50\text{m} \times 0.50\text{m})}{2} \right) \times 0.78\text{m}$ $= 0.35\text{m}^3$ 0.35m³ × 싯가(1m³당) = 금액
나. 거푸집		원	* 일반합판 사용(1회사용) $= \left(\frac{0.4\text{m} + 0.5\text{m}}{2} \right) \times 0.78\text{m}$ ×4면 = 1.404m² 1.404m² × 싯가(1m²당) =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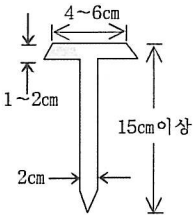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다. 표 석 보 호 콘 크 리 트			* 중량배합손 비빔콘크리트 (A 배합적용) 전체 원 = $\frac{(0.4\text{m} \times 0.4\text{m}) + (0.5\text{m} \times 0.5\text{m})}{2}$ $\times 0.78\text{m} = 0.1599\text{m}^3$ A = $\frac{(0.09\text{m} \times 0.09\text{m}) + (0.11\text{m} \times 0.11\text{m})}{2}$ $\times 0.55\text{m} = 0.0056\text{m}^3$ B = $(0.24\text{m} \times 0.24\text{m}) \times 0.08\text{m}$ $= 0.0046\text{m}^3$ C = ①-② = 0.0302m^3 ① = $\frac{(0.4512\text{m} \times 0.4512\text{m})}{2}$ $+ \frac{(0.4706\text{m} \times 0.4706\text{m})}{2}$ $\times 0.15 = 0.0319\text{m}^3$ ② = $\frac{(0.1046\text{m} \times 0.1046\text{m})}{2}$ $+ \frac{(0.1100\text{m} \times 0.1100\text{m})}{2}$ $\times 0.15 = 0.0017\text{m}^3$ D = $\frac{(0.4706\text{m} \times 0.4706\text{m})}{2}$ $+ \frac{(0.4770\text{m} \times 0.4770\text{m})}{2}$ $\times 0.05\text{m} = 0.0112\text{m}^3$ E = $0.1599 - (0.0056 + 0.0046 + 0.0302 + 0.0112)$ $= 0.1083\text{m}^3$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라. 부 설 인부임	특 별 인 부	원	* 매설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현장운반 인부임 포함 · 인부임 × 0.2인 = 금액
마. 표 석	(주석) 	원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품으로서 양질의 화강암 사용
	(반석) 	원	※ 지역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바. 표 석 대 장 작성비	1점당	원	·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1일 30점 $1인 \div 30점 = 0.03 \rightarrow 1점당$ ·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1일 50점 $1인 \div 50점 = 0.02인 \rightarrow 1점당$
지 적 삼각점	소 계 일반관리비(5%)	원 원	· 계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원 지적산업기사 1일당 $\times 0.05인$ =금액
	산 출 액 계	원	
도근점	소 계 일반관리비(5%)	원 원	※ 표석대장중 반석은 제외
	산 출 액 계	원	

· 본 가격표는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철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근 거
터 파 기		원	특별인부임 1인 1일 17개 $1인 \div 17개 = 0.058인$ $인부임 \times 0.058인 = 금액$
철 제 도 근 점		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규 격품을 사용함 (시중싣가)
부 설 인 부 임	특별 인부	원	1인 1일 20개(현장운반비 포함) $1인 \div 20개 = 0.05인$ $인부임 \times 0.05인 = 금액$
표석대장 작 성 비	1점당	원	- 외업(위치 및 거리측정) 1인 1일 30점 $1인 \div 30점 = 0.03인 \rightarrow 1점당$ - 내업(위치약도 및 대장작성) 1인 1일 50점 $1인 \div 50점 = 0.02인 \rightarrow 1점당$ 계 = 0.05인 지적산업기사 1일당 $\times 0.05인$ =금액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기 초
소 계		원	
일반관리비 (5%)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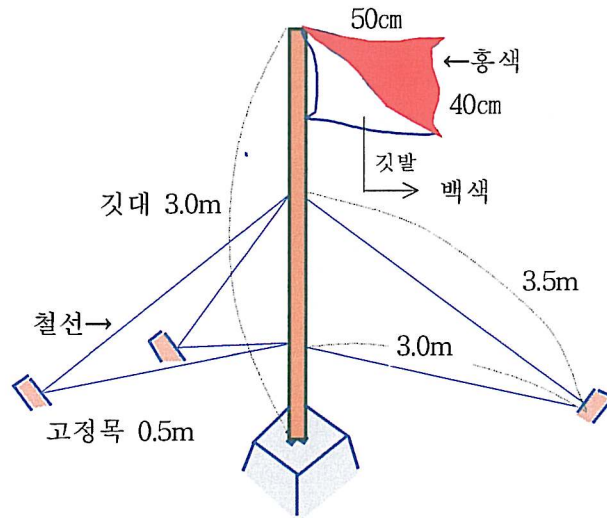
다. 목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기 초
부설인부 (말박기)	1 점당	원	특별인부임 원 1인 1일 50개 $1인 \div 50개 = 0.02인$ $인부임 \times 0.02인 = 1인금액$ $1인금액 \times 2인 = 1점금액$
목 제 표 지	(3.5cm×3.5cm × 35cm)	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을 사 용함. (시중싣가)
소 계		원	
일반관리비 (5%)		원	
산출액 계	1 점당	원	

· 본 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점표대 산출

(1) 규 격



(규격은 지형이나 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재 료

(가) 각 재

깃 대 $4.0\text{cm} \times 4.0\text{cm} \times 3.0\text{m} \times 1\text{개}$

고정목 $4.0\text{cm} \times 4.0\text{cm} \times 0.5\text{m} \times 3\text{개}$

(나) 철탄 선

장 $3.5\text{m} \times 3\text{선} = 10.5\text{m}$

단 $3.0\text{m} \times 3\text{선} = 9.0\text{m}$

(다) 깃 발

가로 50cm, 세로 40cm(바람에 잘 날리는 명주천)

마.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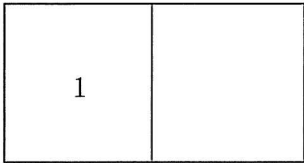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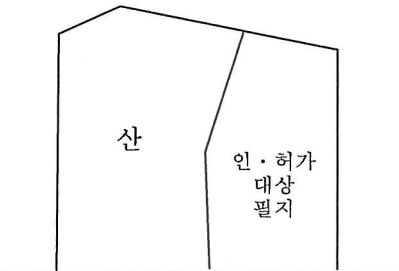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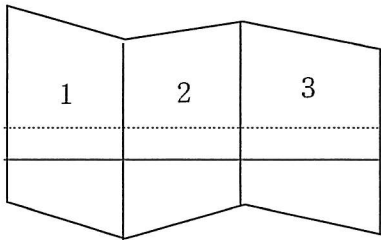
바. 지적측량기준점매설비는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매설비 총액은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결정한다.

사. 지적측량기준점 관측비에는 표석대장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점관측을 수반하는 매설비산출시 기준점 매설비에 표석대장작성비를 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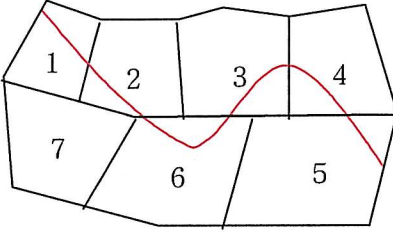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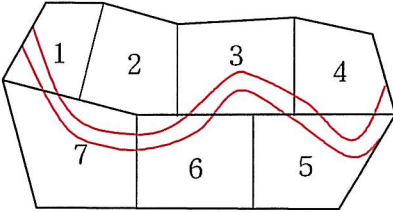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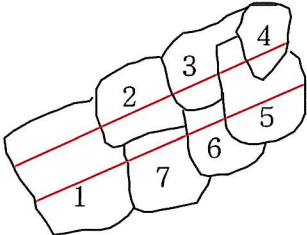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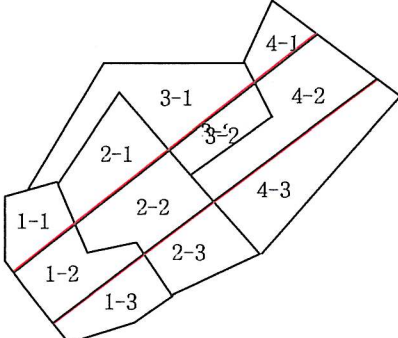
【별첨3】

6. 5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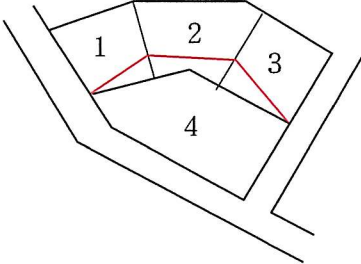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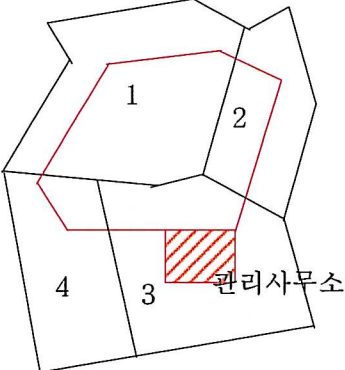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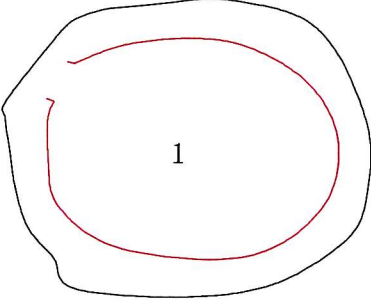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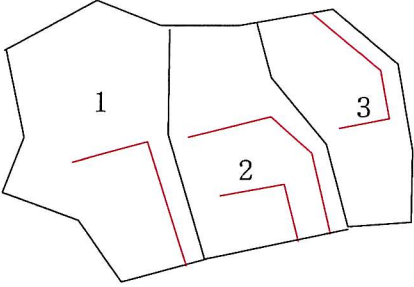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1필지 경계(선) 현황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2 ○ 도상에서 선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 단가에 40% 가산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은 인·허가 등의 현황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2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1필지내 현황선 증가의 경우 (면적측정불요)		○ 각 필지별로 적용 : 6 (기본단가 적용) (기본 : 3, 50% : 3) - 1필지내 경계(선)증가마다 50%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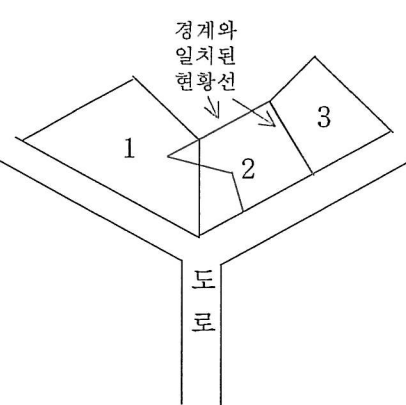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2]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연속지 현황		○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2 ○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 : 6 (기본단가 적용)
농로 등 현황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8 ○ 면적측정불요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경계(선) 증가시마다 50%가산 : 12 (기본 : 6, 50% : 6)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 현황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6 ○ 면적측정불요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경계(선) 증가시마다 50%가산 : 9 (기본 : 7, 50% : 2)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분할 후 공사준공용 현황 (분할경계선 대비 현황)		○ 분할전 필지를 원필지로 하여 적용 : 7 (기본 : 4, 50% : 3) (기본단가 적용) ※ 현황선이 분할된 경계선과 일치할 경우에도 같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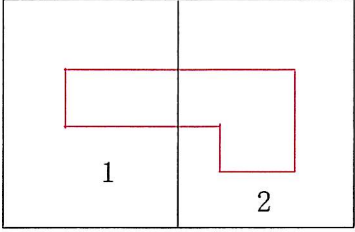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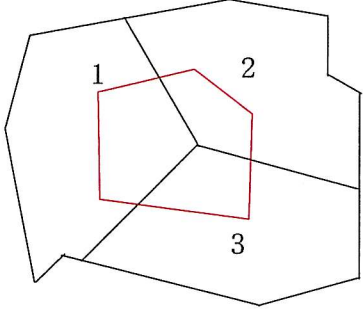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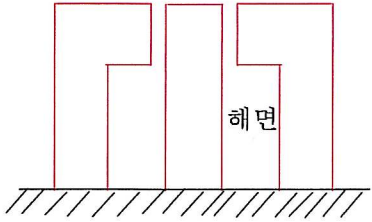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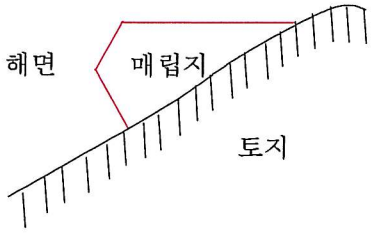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3]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토지 점유선 현황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6 ○ 면적측정불요시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 : 3 (기본단가 적용)
저수지 수몰선 현황		○ 저수지 수몰선 현황 및 관리사무소가 혼합된 경우 - 면적측정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9 (관리사무소 : 1포함) - 수몰선만 표시 :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 4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 선 현황의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 선 현황의 경우 : 4 (기본단가 적용) (기본 : 3, 50% : 1) - 1필지내 현황선 증가시마다 50%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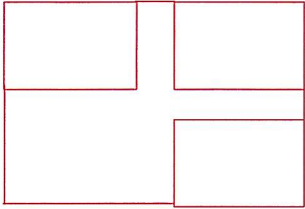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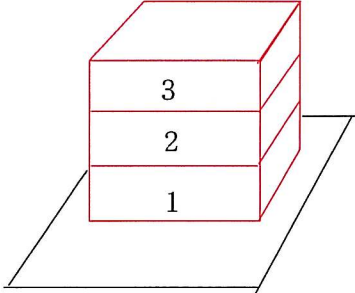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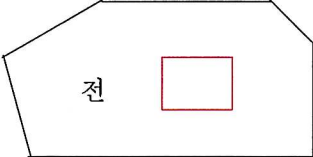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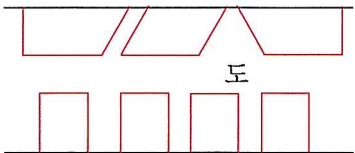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4]

<경계(선)>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현황선(담장·옹벽·철조망 등) 일부가 경계와 일치할 경우		○ 분할식으로 각 필지 면적측정 요구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4 ○ 위치만 표시할 경우 각 필지마다 기본 1선 적용 : 2 (기본단가 적용) ※ 본 예시도와 같이 현황선이 경계와 일치할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일치된 부분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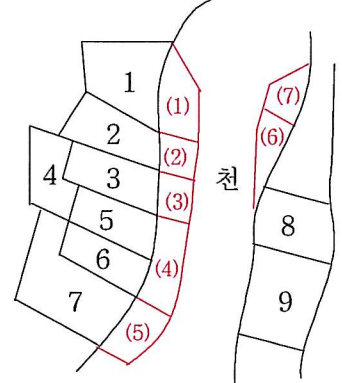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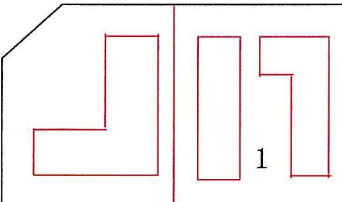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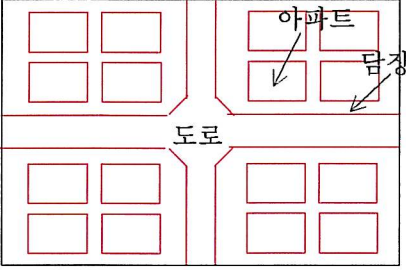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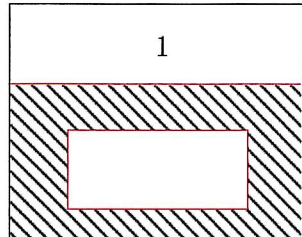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5]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현황		○ 각 필지별로 분할식으로 면적 측정 할 경우 : 4 ○ 단독건물로만 위치표시 : 1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단독으로 면적측정시에도 같음 : 1 (건축물면적이 기준면적초과시 면적가산계수 적용)
수필지에 걸친 구조물 현황		○ 분할식 : 6 ○ 위치만 표시할 경우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해안구조물 현황		○ 해안구조물 구획별로 적용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 가산계수 적용 : 3
공유수면매립 현황		○ 실측하는 구획수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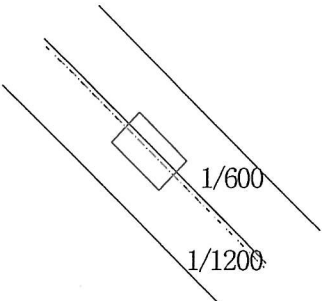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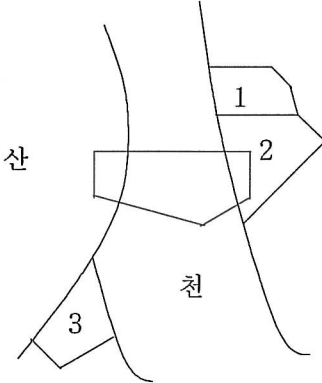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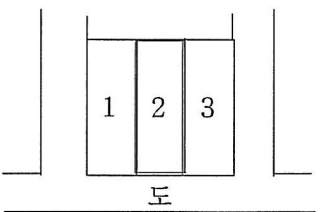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6]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내·외부 현황		○ 건축물 내·외부 현황 : 4 - 기본단가 1필지 적용하고 구획 증가마다 50%적용 (기본 : 1, 50% : 3) ○ 면적측정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건축물 층별 현황		○ 건축물 층별 현황 - 기본단가 1필지 적용하고 층별 증가마다 50%적용 (기본 : 1, 50% : 2) - 층별 면적측정 포함
면적지정 현황		○ 면적지정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2
도로 점유 현황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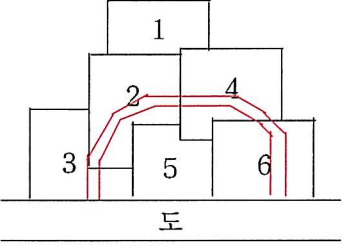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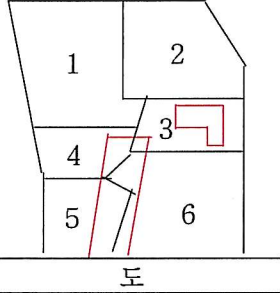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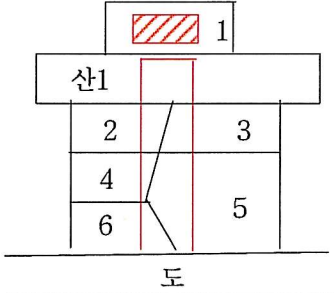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7]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하천 · 구거부지 점유 현황		○ 점유지별로 면적측정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 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분할식 토지와 구조물 현황 혼합		○ 구조물과 분할식 토지현황이 혼합된 경우 : 5 - 구조물 구획별로 적용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토지는 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시) : 4 - 구조물 구획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1 (기본단가의 50%적용)
구획과 경계(선)현황 혼합 (아파트단지 현황)		○ 각 현황별로 면적측정시 분할 측량과 같게 적용 : 21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시) : 20 (기본 : 16, 50% : 4) - 구획(아파트) : 16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담장) : 4 (기본단가의 50%적용)
점유현황과 구조물 현황 혼합		○ 분할식 : 3(토지:2, 구조물:1) ○ 위치만표시 : 2(구조물:1, 선:1) - 구조물 : 1구획 적용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기본단가의 50%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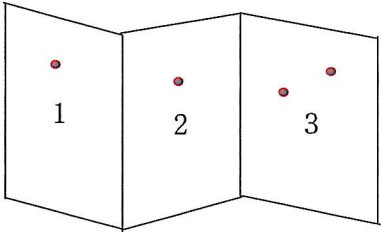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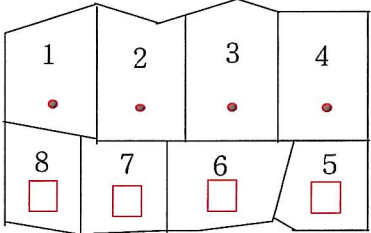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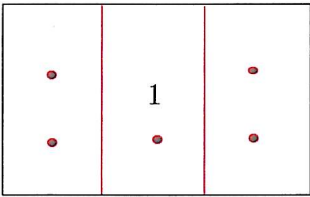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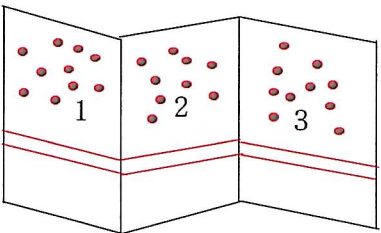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8]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측척이 다른 행정구역 이 2개이상 걸쳐 사용 허가 조건인 현황		○ 행정구역별로 각 필지 면적 측정시 분할식으로 적용 : 4 ○ 면적측정불요시 구획단위로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동일측척으로 동일도엽에 작 성할 경우 신·측도품 적용
점유 현황		○ 건축(구조)물일 경우 : 1 (현황실측 면적 가산계수 적용) ○ 분할식 :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선위치만 표시 : 각 필지마다 기본 1구획 적용 - 현황선 증가시 50%가산 (기본단가 적용)
구획선이 경계와 일치한 위치 현황		○ 현황선과 경계선이 완전 일치할 경우 : 1 (원면적 기준단가 적용) ○ 한쪽일부 경계선만 확인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9]

<구획>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허가 및 준공에 수반되는 도로 현황 (진입로 등)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축척이 상이한 지역의 건축(준공)을 위한 진 입로 현황		○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동일축척으로 동일도엽에 작성 할 경우 신·축도폭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0]

<점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점 위치 현황 (전신주, 묘지 등)		○ 각필지별로 기본단가 적용 : 4 (기본 : 3, 50% : 1) - 필지내 점 증가시마다 50%가산 ○ 묘지 등에 대한 면적측정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점과 구조물 현황 (전신주, 철탑 등)		○ 실측하는 점 또는 구조물수를 기준으로 적용(위치만 표시) : 8 - 필지내 점 또는 구조물 증가시마다 50%가산 ○ 구조물에 대한 면적측정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선 또는 점위치현황이 혼합된 경우		○ 위치현황 : 7 (기본 : 1, 50% : 6) ※ 선현황에 의하여 분할식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점 현황과 경계(선) 현 황을 연속지 또는 집단 지로 측량할 경우		○ 50% 적용분을 기본(50필지내)에 우선적용한 다음 순차적으로 나머지 필수 적용 - 연속지, 집단지의 경우 면적가산계수 적용을 하지 않음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1]

고객측량의뢰 조건	예 시	지적측량수수료적용
임야 전체가 인·허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할 등록전환측량 의뢰		○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임야 전체가 인·허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할 등록전환측량 후 2필지 분할측량의뢰		○ 등록전환측량 1필지 수수료 적용 ○ 2필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적용
해당임야 한쪽부분만 인·허가를 받아 등록전환측량 의뢰		○ 인·허가 부분의 면적만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나머지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은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 - 나머지 부분 주위가 임야라도 소관청이 등록전환 권고 시 등록전환측량수수료 감면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4-가 -1)
원면적(5만㎡)중 인·허가에 의한 등록전환대상부분(4만㎡)에 대한 등록전환 후 4필 분할측량 의뢰		○ 전필지를 등록 전환하되 인·허가 부분 면적(4만㎡)에 대한 1필지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 등록전환 후 분할필지가 6필지이나 인·허가 부분인 4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수수료를 적용 ○ 지목변경이 없는 2필지에 대하여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감면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4-가 -2)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형질변경 없이 단순 소유권 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6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수수료 6필만 적용 ※ 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요령 14-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수수료 적용예시 12]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도시계획선 측량		○ 면적이 적은 100-1번지(ㄴ)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측량		○ 도시계획선 필지인 100-1번지 (ㄴ)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 지적선을 경계복원한 100-1번지 (ㄱ)부분 : 1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 지적선을 경계복원한 100-1(ㄱ), 100-1번지(ㄴ) 부분 : 2필지 적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필지 100-1(ㄱ), 100-1(ㄷ) 부분 : 2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필지 100-1(ㄱ), 100-1(ㄴ), 100-1(ㅁ) 부분 : 3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 및 경계복원측량필지 100-1(ㄴ), 100-1(ㄷ), 100-1(ㄹ) 부분 : 3필지 적용
도시계획선 측량		면적이 적은 100-1(ㄴ), 100-1(ㄷ), 100-1(ㄹ) 부분 : 3필지 적용

2010 지적측량수수료

☐ 고시기관 : 국토해양부

-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2호
- 고 시 일 : 2009. 12. 28
- 시 행 일 : 2010. 1. 1
- 홈페이지 : www.mltm.go.kr

☐ 편집인쇄 : 대한지적공사

- 문의 : 전화 02-3774-1200~1209(사업지원팀)
팩스 02-3774-1229
 - 홈페이지 : www.kcsc.co.kr
 - 인터넷 지적측량신청 : www.kcsc.co.kr
<http://ers.kcsc.co.kr>
-